제2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250호 관련)

2021. 12. 15.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12월 15일(수) 10:08~18:52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원장

(의결 제272호, 제278호~제289호)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250호『㈜**에임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당사는 규제당국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지적 게시물에 대한 점검 및 시정노력을 기울이는 등 투자광고 규정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림. 부디, 신생투자자문사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더라도 규제의 형평성 및 당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시어 선처를 부탁드리겠음.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총 세 가지임. 첫 번째는 금감원의 지적대상별로 투자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 번째로 과태료 부과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마지막 세 번째는 지적 대상 콘텐츠의 게시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음. 먼저, 금감원의 지적 대상별 투자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음. 금번에 지적받은 콘텐츠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이유는 일단 투자광고의 해당 여부가 금융투자회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광고 해당 여부의 개념 요소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각 유형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투자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설명 드리고자 함임. 유형 1은 대표이사 개인 등 회사가 아닌 제3자의 영상 콘텐츠, 유형 2는 회사가 ☆☆☆에 게시한 영상 콘텐츠, 그리고 유형 3은 AIM 앱 내 사용자 개인 콘텐츠 공간에 표시된 맞춤형 콘텐츠임. 이 세 가지를 각각 투자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면 일단 개념요소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인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지, 널리 알리는 행위가 있는지를 각 유형 별로 저희가 표를 정리해서 보여드렸음. 유형 1은 대표이사 개인 등 회사가 아닌 제3자의 영상 콘텐츠는 금융투자회사라는 그 주체에서 요건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였음. 유형 2의 경우에는 회사가 ☆☆☆에 게시한 영상 콘텐츠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투자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 형식적으로는 투자광고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임. 그리고 유형 3은 AIM 앱 내 사용자들에게 개인 별로 제공된 콘텐츠인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개인 앱 이용자들, 개인에게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했음.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유형 1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나 다른 기관에서 게시한 ☆☆☆ 영상으로 총 8건이고, 대표이사 개인이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해외계정 그리고 대표이사가 외부 인터뷰한 내용으로 ◯◯일보의 기사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은 게시 주체가 금융투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유형 2는 회사가 ☆☆☆ 채널에 게시한 영상 콘텐츠와 TV 광고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형식면에서 금융투자회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다만, 뒤에서 내용적인 부분을 따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유형 3은 앱 내 개인별 맞춤형 In-App 콘텐츠로서 앱으로 모든 1:1 서비스 운영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개인별 상황 또는 질문에 따라 필요한 설명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설명자료임. 그러니까 앱 이용자들의 단계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이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불특정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AIM 앱에 개인이 들어가서 'Ask AIM'이라는 것을 누르면 이 내용 항목에서 개인들이 찾아서 해당 콘텐츠를 보게 되는 것임. 이것이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AIM 앱 이용자 개인들이 접근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임. 사용자가 개별 문의를 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써 주고 그 답변에 대한 구체적 설명자료로서 제공되는 부분이 이런 유형 3에 해당되는 부분임. 이런 부분은 다 AIM 앱 이용자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여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투자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불특정다수가 어떤 의미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했는데, 불특정다수는 일단, 금투협 규정. 본 건이 적용되는 시점의 금투협 규정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음.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중간에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2021.6.8.) 4쪽 발췌>를 보시면 '특정 다수(예: 신용카드 회원)' 이렇게 되어 있음. 그러니까 이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회원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특정 다수라고 표현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가 아님. 신용카드 회원과 마찬가지로 앱 이용자들도 특정다수에는 해당할 수

는 있을지언정 불특정 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그래서 유형 3인 In-App 콘텐츠는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가 아니어서 투자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것이 앱 이용자들에게 한정되고, 앱 이용자들도 모든 앱 이용자가 아니라 각 이용 단계마다 앱 이용자가 처한 상황마다 각각 제공되는 그런 콘텐츠라는 점을 말씀드림. 지금까지 유형 1, 유형 2, 유형 3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씀드렸고, 내용상 과연 영위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에임은 투자자문사로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를 할 여지는 전혀 없음. 그리고 영위업무 관련하여 기존의 PT자료에서 발표해 드렸던 내용인데 어떤 일부의 문구가 광고로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콘텐츠 내용을 봤을 때 투자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음. 다만, 저희가 정말 부수적으로 이번에는 판단을 해 봐서 이 내용상 투자자문계약의 체결을 유인하는 표시가 전혀 없는 것들, 그러한 광고들을 저희가 뽑아 봤는데 총 11건인데 이 11건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시스템 이용방법, 업무절차 이런 내용들만을 넣고 있지, 금투협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광고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다고 판단을 했음. 그리고 그중 TV광고 부분이 있는데 TV광고는 회사 로고 또는 이미지 광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음. 왜냐하면 TV광고는 지난번 PT자료에서 보여드린 것인데 특별한 내용이 없음. ㈜에임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고, 이렇게 ㈜에임의 투자자문사가 있다, 그리고 '상위 1%의 서비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상표출원을 한 로고 정도에 불과한 내용임. 그래

서 내용상 TV광고도 투자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함. 그러면 TV광고와 ㈜에임 프리미엄 자산관리 서비스라는 회사에서 게시한 ☆☆☆ 두 개가 있는데 이중에도 내용상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투자광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1건으로, 회사가 게시한 ☆☆☆ 영상 1건으로 생각됨. 다만,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으나 감독당국에서 보시는 그 판단을 저희는 존중할 것이고, 이러한 사항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의 광고에서 지금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로 이전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함. 지금 온라인상에 올리는 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널리 퍼지는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 그런데 그러한 속성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들이 검색할 수 있어서 볼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광고로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광고 집행 비용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적으로 앱 이용자들에게 이런 투자를 해라, 어떻게 보면 조언이나 교육 같은 글을 올린 내용들이 다 광고로 처리되어 있는, 광고로 취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 같음. 그래서 이러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환경도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음. 최근에 ☆☆☆나 블로그 그런 것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개인들의 게시글들이 있음. 심지어 금융회사의 대표들이 만든 ☆☆☆ 영상도 있음.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이것을 광고로 규율해서 준법감시인 심의필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규제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대표이사 직무정지와 회사에 3억 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단을 써야만 하는 것인지, 검토 부탁드림. 꼭 제재가 아니더라도 규제의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함. 어떻게 보면 신생투자자문회사로서 법령을 놓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투자자문사의 업무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존의 규제로 했다가는 위반사항이 너무 많이 될 수 있는 여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음. 이렇게 대표이사 직무정지, 과태료 3억 원이라는 제재수단 말고 이러한 신생업체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임. 다음으로, 과태료가 앱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분임. 회사는 과태료 3억 원 납부시에 투자자문사의 최저자본금 요건의 유지가 불분명한 상황임. 지금 당장은 최소자본금 요건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음. 하지만 3억 원을 내고 대표이사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추가로 자본을 유치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앱 이용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음. 그러한 앱 이용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앱 이용자들의 불편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임. 현재 앱 이용자가 80만명이고 자문계약 체결자가 2만명임. 중단되면 3,000억 원의 투자자문계약 중단을 비롯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상당할 것이고 그리고 당사가 자문하는 글로벌 자산배분 공모펀드 가입 투자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피해가 예상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그리고 요청하신 세 번째 사항으로 게시내용 삭제 부분은 일단 2020년의 금감원 현장검사에서 준법감시인 심의 관련 지적을 받고, 준법감시인의 심의필에 준해서 내부통제기준 심사필 표시를 모두 완료했음. TV광고는 2021년 2월29일 마지막으로

송출하고 전면 중단했음. 금감원 지적을 받고, 그리고 금감원 지적대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금감원의 조치안 열람을 통해서 지적대상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파악했고 즉시 게시를 중단했음. 다만,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지적대상 광고로 선별해서 게시 중단하는 과정에서 일부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았던 것을 파악했고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현재는 모든 지적대상 콘텐츠에 대한 게시를 중단했음.

ㅇ **(위원)** 투자광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셨음. 유형 1에서는 게시 주체가 금투회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회사는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또는 언론사 등 다른 기관이 게시한 광고물이기 때문에 회사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고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에 미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가 지적했던 모든 투자광고건은 투자 유인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가 회사 홈페이지 등 회사 공식채널에 게시되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의 투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 **(진술인)** 일단, 유형 1은 회사의 채널이 아님. Ask Jenna라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널이고, 다른 부분도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해외계정이나 ○○일보 인터뷰 기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융투자회사에서 만든 콘텐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

- **(보고자)** 회사 채널이 하나 있고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채널이 있는데 게시글들이 중복되어 게재되어 있음. 저희는 회사 쪽에 대한 부분만을 지적 했음. 회사 쪽에서 얘기하는 인터뷰 등의 경우에도 회사 채널에 게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대상에 포함했음.

  ▶ **(진술인)**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첨부자료로 보내드렸던 창업일기 같은 경우가 좋은 예시인데 이 창업일기의 원출처는 저의 개인 페이스북이 맞음. 그런데 제 생각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유형 3으로 기재되어 있는 In-App 콘텐츠, △△△포스트 게시물로 재인용된 경우가 있음. 이런 형태로 약간, 그러니까 어느 유형으로 넣느냐가 혼란의 여지가 생길 것 같음. 일반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할 때 대표이사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재링크되는 경우가 있음. 그러한 형태와 유사한 것인데 다만, 저희는 외부에 공개되는 매체라기보다는 △△△포스트 위주로, 또는 실제 저희가 광고용으로 쓰는 채널이 ☆☆☆ 이랬던 것임.

ㅇ **(위원)** 유형 1과 유형 3을 혼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원래 주장하시는 바는 널리 알리는 행위 관련해서 ㈜에임 앱 사용자만 본 건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회사 쪽에서는 주장하는 반면에 금감원 쪽에서는 이것이 △△△포스트 등에 기재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광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음.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포스트가 본인들이 통제(Control)하지 않고 다른 분들에 의해서 △△△

포스트가 관리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 **(진술인)** 그렇지는 않음. △△△포스트가 일반인이 접근하는 △△△의 하위 서비스는 아님. 저희가 △△△포스트를 정확히 정의하면 창작자 플랫폼인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자료들을 파일형태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니 웹사이트로 제작하고 싶었음. 그러니까 설명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tool)이 직접 개발을 하지 않아도 △△△포스트라는 창작자 플랫폼이 있음. 모바일 페이지 창작자 플랫폼이라고 △△△가 정의함. 그래서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쉽게 페이지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유형3이라고 하는 △△△포스트라는 채널은 일반인이 △△△에 검색을 했을 때 검색되지 않음. 대신, 이런 페이지를 만들고 싶은 창작자들이 △△△포스트라는 하위 서비스에 사용자일 경우 거기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경우에는 ㈜에임의 계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금감원에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된 것인데 광고물을 널리 알리는 형태로 사용되는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게시물을 비공개처리하고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조차도 구현되어 있지 않음. △△△를 생각하면 보통 블로그를 많이 생각하시고 그 블로그는 광고용도로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게시물 검색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기능들이 다 구현되어 있음. 그런데 포스트는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일맥상통함. 창작자 플랫폼이어서 △△△ 메인 포탈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게시물을 다

내렸음에도 △△△포스트로 들어와서 검색하는 경우에는 검색이 되는 건들이, 좀 양질의 콘텐츠일 경우에는 보이는 사례가 있었음. 그래서 그 콘텐츠들이 검색되는 것들을 모두 원천 삭제하기 위해서 △△△에 문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음.

○ **(위원)** 알겠음. ㈜에임 앱 사용자뿐만 아니라, 완전히 누구나 접근(public access)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로그인의 과정을 거쳐서 접근은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음.

▶ **(진술인)** 맞음. 접근은 가능함.

○ **(위원)** 시정 노력과 관련해서 ㈜에임 측에서는 열심히 시정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금감원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 **(보고자)** 지난번 증선위에서도 보고 드렸던 조치대상에 대한 광고 게시글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증빙으로 확보해 놨음. 저희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증선위 끝나고 회사 측에 문의했을 때 마케팅 담당자는 ㈜에임 쪽에서 생각하기에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지만,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대부분의 광고가 그대로 게시되어 있었음.

○ **(위원)** 회사 쪽에서는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금감원 쪽에서는 광고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진술인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람.

▶ **(진술인)** 통화하신 담당자 분은 그날 출근하신지 이틀째 된 분으로 회사 상황을 알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그때 전화 드렸던 내용은 금감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게시물을 삭제하였는데 왜 검색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라고 요청을 드렸음. 이틀째 된 담당자는 본인이 금융회사에 있어 본 분이 아니니까 그냥 본인 생각을 말씀하시기를 "아, 이게 광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하신 것이고, 통화 녹음기록을 봤는데 게시물이 광고가 아니어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님. 그냥 본인이 "아, 이것은 광고가 아닌데," 라는 말씀을 하셨고 다만 검사관님께서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삭제를 안 하셨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예", "아니오"라는 답을 안 해서 혼선이 생긴 것 같음. 저희는 비공개, 삭제 이런 순서로 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저도 너무 이상해서, 왜 그것이 검색되는지를 보니까 △△△와 구글 서버에 기록이 바로 삭제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함. 그래서 ㈜에 임 계정에 들어가면 제목들이 검색되고 그것을 눌렀을 때는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에러가 나거나 또는 이것이 캐시에 남아서 본인이 검색했던 기록이 있는 디바이스인 경우에는 페이지 내용이 보이기도 한다고 함. 그런데 일반사용자들이 △△△포스트에 들어가서 검색했을 때는 안 보이는 상태였음.

○ **(위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난 증선위 이후에 이틀인가 사흘 후에 실무자와 통화한 이후에 대표님께서 쭉 보셔서 추가적으로 삭제한 것들이 있는지?

▶ **(진술인)** 검색된다고 해서 보니까 실제 검색이 되었고, 완전삭제 방법을 찾아서 추가적인 행위를 취했음.

▶ **(진술인)**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함. 창업 이후 어느 덧 7주년이 다가옴. 2015년 7월 막막했던 첫걸음을 담대하게 내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과 핀테크 지원센터의 격려와 지원 덕분이었음. 그러나 지난 7년간 현실에서 부딪힌 우리 금융산업의 현실은 참담했음. 처음 기획했던 비대면 일임형 서비스는 대형 금융사의 유권해석 신청으로 불허되었고,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전면 수정하는 어려움 끝에 2년 반이 지나서야 AIM 앱을 런칭할 수 있었음. 고객이라고 해도 채 200명이 되지 않아서 매년 수억 원의 적자로 허덕였음. 그럼에도 우직하게 실행하며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나름의 소명의식과 보람 덕분이었음. 19년 전인 1996년 미국 유학길에 오르면서 보다 넓은 세상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언젠가 내 나라에 돌아와서 내 민족의 삶에 기여하고 싶다는 다짐이 있었음. 미국에서 고객으로 만났던 글로벌 상위 기관투자자들 뿐 아니라, 내 나라, 내 주변 사람들의 자산증식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열렸다고, 그렇게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사실이 가슴 벅찼고, 그 노력이 결국 상대의 마음에 닿아서 울림이 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음. 그리고 ㈜에임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음. 2017년 가을께 당시에 절절한 마음을 담은 고객과의 에피소드를 개인 SNS에 올렸음.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1월에

㈜에임의 첫 TV 광고로 만들어졌음. ‘상위 1% 자산관리를 당신에게’라는 ㈜에임의 로고에는 ㈜에임의 설립 철학이 담겨있었고, 출연 배우들 사이의 대화에는 고객과 저의 실제 대화가 그대로 담겼음. 그런데 해당 광고 소재에 대한 광고 심사를 금투협에 의뢰한 것을 기점으로 금투협에서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언론사에 허위 부정 기사를 제보하였음. 금감원에도 거짓사실을 제보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미흡한 것은 있었지만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2020년 2월 금감원 현장검사를 받게 되었음. 검사가 6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 그 과정상에 압박감을 느낀 회사 앱 개발자, 디자이너 전원이 다 퇴사했음. 그래서 저는 정말로 홀로 남아서 수만 명의 사용자들이 있는 앱 서비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혼자 남아서 오늘날까지 2년간 대관업무에 제가 미흡하니 법률과 회계자문 비용을 지출하면서 생존에만 힘써오고 있음. 지난 2년 동안 가장 제가 어려움을 느꼈던 점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웠다는 점임. 목숨처럼 지켜온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팀원들을 한 순간에 모두 잃고 어떤 업무 광고도 하지 못하는 사이 회사의 성장세가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저 무력하게 힘없는 자의 자리에서 세월을 견뎌냈음.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았고 자살충동도 상당히 많이 있었음. 2021년 올해 7월 금감원 조치안을 받아보고 나서야 처음으로 2017년 개인 SNS에 게시했던 창업일기가 금감원에서는 불법 투자업무 광고로 보아 6,000만 원의 과태료를 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저로서는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한 콘텐츠들이어서 불법 업무 광고로 기재된 금액의 합계

가 무려 30억 원에 최초 산정이 되었다는 것에 정말 놀랐음. 얼마 전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님께서 제게 규제당국에 대한 태도(attitude)에 문제가 있어 금융투자회사 대표 자격이 없다고도 말씀을 하셨음. 그냥 부족한 마음에 억울하거나 당혹스럽거나 이런 마음보다는 그저 허탈한 마음이 들었음. 제 삶에 가장 중요한 30대 전체를 정말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전문성과 진심을 다해 도움이 되고자 보낸 7년 세월임. 정말 미흡했지만 규제준수에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힘썼고 일반 국민들이 올바른 경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식과 노하우를 정말 무료로 나눴음. 자문계약 고객들에게 초유의 코로나19 위기에도 자산을 지켜내는 경험을 드렸음. 지난 7년 동안 과금한 이용료 총합인 30억 원 대비 25배에 달하는 700억 원 이상의 자산증식이 이루어지기도 해서 실제적인 기여도 해냈음. 그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대안을 드리고 싶었던 믿음대로 행동한 면이 있음. 현재 회사는 누적적자 30억 원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음. 이제 3개월 직무정지 이후에 다가오는 2022년 4월15일 임기를 끝으로 저는 ㈜에임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됨. 대표이사 개인이 자문역으로 일하는 1인 자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상황으로 회사는 내년 상반기 폐업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이렇게 저와 ㈜에임의 여정은 끝을 맞이하게 되었음. 그렇지만 부디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혁신기업들의 미래에도 공감과 지지가 더해지는 규제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함.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진술인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증선위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제재내용에 3개월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가 함께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러면 저분 말씀대로 3개월 직무정지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대표를 그만 두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 **(보고자)** 지배구조법상 연임 자격요건 제약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음. 제재조치일로부터 4년 동안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제약조건이 있을 것 같음.

○ **(위원)** 이 회사가 주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제재가 확정되기 이전에 연임 주총을 하고 그 후에 직무정지가 확정된다면 새로 시작한 임기 동안은 그만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설사 본인이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누구든, 예를 들어 본인이 매각하고 나가든 아니면 본인은 주주로만 있고 전문경영인을 모셔오든 어떤 식으로든 모색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닌지?

- **(보고자)** 그러함.

- **(보고자)** 폐업이라고 얘기한 것은 과도하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됨.

ㅇ **(위원)**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림.

- **(보고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별표3]에 여러 가지 과태료 감경사유에 대한 근거가 있음. 지금 고려되고 있는 과태료 감경사유는 최고한도액의 10배, 그러니까 예정금액이 법률상 최고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 이내로 감경하는 부분, 그리고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을 감안해서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 이내에서 감경하는 이런 근거 조문이 있음. 1안을 적용할 경우 논리해석상 과태료 부과금액은 27억 원 8,000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부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2안은 27억 8,000만 원에서 2,520만 원까지 부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저희 국에서 과태료 3억 원 부과 건의를 드렸던 사유를 말씀드리겠음. 첫 번째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임. ㈜에임은 아까 대표가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번 의견제시할 때도 저희가 △△△포스트 문제를 제기해서 그 이후에 시정이 됐던 부분들이지, 자발적으로 시정하지는 않았음.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지속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불법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막대한 부분임. ㈜에임은 2019년 불법광고를 본격적으로 게시한 이후에 견조한 양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고객수도 2018년말 대비 2만 7,000명이 늘었고 자문수익도 6,000만 원에 불과했던 회사가 2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게 되었음. 또, 現재무상태는 과도한 불법 투자광고비 지출에 기인한 것

으로 2019년 8억 원에 불과했었던 광고비 지출 규모가 저희가 검사를 나가서 투자광고를 중단하라고 권고를 했던 그해 연도에 31억 원이 과도하게 지출이 되었고, 이런 경비 소요로 인해서 자본기준이 악화됐던 부분들, 이런 불법행위 소요 경비로 인해서 과태료가 감경되는 모순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했음. 두 번째로 과도한 제재 감경 방지를 고려했음. 자본금 10%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에임은 과태료 예정금액의 99.1%를 감경 받게 되어서 과도한 감경으로 판단하였음. 마지막으로는 타 투자자문사의 유사 불법행위 예방 측면임. 취득한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금전적 제재 미부과시 타 투자자문사의 불법행위가 발생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법행위 정도를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자본기준 감경 적용시 과태료를 감내한 위법행위가 발생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음. 아울러,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과태료 10억 원 부과시 투자자 피해가 발생가능하고 자본 규모에 따른 감경 취지가 과태료로 폐업에 이르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 그리고 위법행위의 중대성, 자본잠식의 경위, 경제적 이득 규모, 회사의 자본 및 현금성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태료 금액 3억 원을 증선위 및 금융위에 건의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 **(위원)** 저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이 없는 것 같음. 기본적으로 저는 10억 원이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제재심 쪽에서 결정한 사항이 그나마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재심에서 결정된 사안에 동의를 함.

○ **(위원)** 저도 유사한 생각인데 제재심 결정한 사유를 보면 2021년 7월말 자기자본 규모가 4억 8,0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자본유지 조건에 딱 맞췄음.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이런 것들이 전례와 등등을 고려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저도 3억 원에 동의하지만, 굉장히 생소하기는 함. 그리고 지금 여기는 계속적으로 불법광고가 지속될듯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건을 달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 **(보고자)** 저희가 이번 검사제재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서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한다면 보다 더 엄중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저희가 행정적 제재 및 금전적 제재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임.

- **(보고자)** 저희가 제재를 하면 제재 결과를 다시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때 저희가 광고 지속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어 있음.

○ **(위원)** 일단, 제재하고 그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유형의 광고를 계속 한다고 하면 그때는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광고를 계속하고 있으니 그 동일한 유형의 광고에 대한 제재를 다시 한 번 더 부과하면서 그때는 광고 금지명령을 하든지, 시정명령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보고자)** 그렇게 생각함.

ㅇ **(위원)** 저는 과태료 양정과 관련해서 금융위가 그 부분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사이에서 재량을 발휘한 적이 없고 그냥 자본금 10%를 넘어서는 모든 금액을 감경해 주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여기는 자본금이 작다보니 자본금 10% 이상을 전부 다 감해주는 식으로 하면 지적사항에 비해서는 과태료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필요유지자본 요건 충족이 가능한 수준의 과태료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기준시점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다르게 되어 버리면 그때그때 이 회사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 갈 수 있을 것이냐, 기준시점도 광고비 지출이라든지, 해당 비용지출이 많아서 연말기준으로 너무 작아버리면 연말기준으로 하지 않고 또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또 과태료 10%라고 해서 그 위를 전부 다 감해주려고 생각하면 연중 자본금이 가장 높았을 때를 찾아서 하면 될 것이지만 그것은 감독당국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닌 것 같음. 기준시점을 그렇게 임의로 하는 것이나 필요유지자본 요건 충족이 가능한 과태료라는 것이 제재심에서 고심을 한 것은 알겠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사전에 얼마만큼 업계에서 혹은 감독당국 내부에서 공유가 됐었느냐, 사전에 관련 원칙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두 분 위원님

이 동의는 하셨지만, 금감원의 이러한 양정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 고민과 불가피함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두 분 위원님 생각도 저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함.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은 아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재심과 금감원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지만, 정말 이것 밖에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음. 예를 들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향후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자본금이 작은 회사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든지 앞으로 우리가 적용하게 될 것을 다른 업권과의 비교를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적어도 하나의 원칙은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함. 고생 많이 하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부분만 한번, 필요하다면 나머지 업권의 의견까지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확신을 드린 후에 다음에 의결할 것을 제안함.

- **(보고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심에서 재량의 범위 중에 불법투자 광고비 지출로 인한 자본금의 축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경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억 원으로 결정을 하신 것이었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다르시다면 지금 그 부분을 그대로 정해서 가면 될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업계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구해서 한들, 그것도 어차피 재량의 범위 내에서의 어느 한 금액

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하시면 그것이 모두 그 기준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임. 보셔서 아시겠지만 향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치도 서둘러서 해야 될 상황이고, 아까 연임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그 연임이 되지 않게 저희가 서둘러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실 처음 원안은 10억 원 부과로 건의했었음. 그 부분이 제재심에서 3억 원으로 수정이 되었던 것임.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